

## 1 [02020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li>○ 연령 : 만6세 이하</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li> <li>2.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시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li> <li>3. 부모협조 하에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감사의뢰를 통하여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신청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감사의뢰서 및 검사결과 제출)</li> </ol> </li> <li>※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누리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원(보건소, 소아과 등) 건강검진결과 발달지연 영유아</li> <li>2. 병원(보건소, 소아과 등) 건강검진결과 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li> <li>3. 유아교육기관장 감사의뢰를 통한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li> </ol> </li> <li>※ 우선순위에 세부 순위는 조부모, 장애부모, 한부모, 다문화가구,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li> <li>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문제 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li> <li>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ol> </li> <li>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td> <td>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91 302 1396 719"> <thead> <tr> <th data-bbox="391 302 1259 369">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59 302 1396 369">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1 369 1259 616">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회당 6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회당 60분)         </td> <td data-bbox="1259 369 1396 616">           주2회            회당 60분         </td> </tr> <tr> <td data-bbox="391 616 1259 667">           2. 부모상담 및 교육         </td> <td data-bbox="1259 616 1396 667">           월1회         </td> </tr> <tr> <td data-bbox="391 667 1259 719">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td> <td data-bbox="1259 667 1396 719">           월1회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 대상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li> <li>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li> <li>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li> <li>4단계 : 서비스 종결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사후검사 실시)</li> </ol>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의무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회당 6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회당 6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5)</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안전관리기준 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ol> </li> </ol> <p>○ 추가 확보시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ol> <p>○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o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ol> </li> </ol>								

## 2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li> <li>○ 연 령 : 만4세~만18세 이하</li> <li>○ 선정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아동(신청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li> <li>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 또는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신청시 소견서 제출)</li> <li>3.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신청시 추천서 제출)</li> <li>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신청시 추천서, 검사결과서, 아동의 재원, 재학증명서, 상담확인서 등 증빙자료제출)</li> </ol> </li> <li>※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li> <li>※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3개월 이상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li> <li>※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원(소아정신과, 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li> <li>2.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추천한 아동</li> <li>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li> <li>4. 사설기관의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li> </ol> </li> <li>※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조부모, 장애부모, 한부모, 다문화가구,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또는 슈퍼바이저 중 1인은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행동치료학과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및 치료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단, 현재의 제공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2019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둠</li> </ul> </li> <li>○ 제공인력 자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li> <li>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②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③ 석사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ol> </li> <li>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li> </ol> </li> </ul>

항목	내용																
<p>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p>	<p>○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p> <table border="1" data-bbox="336 353 1465 573">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td> <td>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d> <td>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2 763 1453 1189"> <thead> <tr>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필요시)</td> <td>필요시</td> </tr> <tr> <td>2. 기본서비스 (필수) ①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 상담 및 놀이를 통한 심리안정, 정서발달, 사회성 등 지원, 언어장애에 대한 증상별 치료, 인지발달 및 자존감 향상 등</td> <td>주1회 회당 50분</td> </tr> <tr> <td>3. 부가서비스 (선택)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내, 실외) ② 부모훈련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기술 상담 ③ 기타 프로그램 :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된 부가서비스</td> <td>수시</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li> <li>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1개 기본서비스(월4회, 회당 50분)와 1개 부가서비스(수시) 병행</li> <li>3단계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 이용자에게 제공)</li> </ol>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PRC, CBCL) 의무실시</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필요시)	필요시	2. 기본서비스 (필수) ①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 상담 및 놀이를 통한 심리안정, 정서발달, 사회성 등 지원, 언어장애에 대한 증상별 치료, 인지발달 및 자존감 향상 등	주1회 회당 50분	3. 부가서비스 (선택)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내, 실외) ② 부모훈련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기술 상담 ③ 기타 프로그램 :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된 부가서비스	수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필요시)	필요시																
2. 기본서비스 (필수) ①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 상담 및 놀이를 통한 심리안정, 정서발달, 사회성 등 지원, 언어장애에 대한 증상별 치료, 인지발달 및 자존감 향상 등	주1회 회당 50분																
3. 부가서비스 (선택)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내, 실외) ② 부모훈련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기술 상담 ③ 기타 프로그램 :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된 부가서비스	수시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이나 1:1서비스보다 집단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경우에만 객관적 검사 결과에 따른 소견서 및 보호자 동의에 따라 서비스 후반 3인 이하 가능</p> <p>※ 서비스 후반 : 서비스 6개월 경과 또는 재판정 이용자</p> <p>○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배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홈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1:1~1:12)</li> <li>○ 학습모듈형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6인 이내 (1:1~1:6)</li> <li>※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집단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li> <li>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li> <li>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li> <li>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li> <li>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li> <li>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li> </ul> </li> </ul> </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li>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ul> </li> </ul> </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 4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li>○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손가구의 아동,</li> <li>2. 장애부모(지적, 언어, 청각, 시각, 지체 등의 순)의 아동</li> <li>3. 한부모 가구의 아동</li> <li>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아동</li> </ol> </li> <li>※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인력	1. 아동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li> <li>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li> <li>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전공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④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li> <li>⑤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0%;">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2회 회당 8시간         </td> </tr> <tr> <td>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욕구 상담·조사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탐방, 울산 기관·기업 연계프로그램 연1회 이상 실시</li> </ul> </li> <li>3. 3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li> </ul> </li> <li>4.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의무실시</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월2회 회당 8시간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월2회 회당 8시간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li> <li>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li> <li>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li> <li>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li> </ul> </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ul>

## 5 [190108]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li> <li>○ 연 령 : 만60세 이상</li> <li>○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li> <li>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조손가구의 노인</li> </ul> </li> <li>※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u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data-bbox="355 797 1441 93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0%;">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88천원</td> <td>84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2천원</td> <td>16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8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2천원	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8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2천원	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55 1043 1453 146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주2회 회당 6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상시</td> </tr> </tbody> </table> </li> <li>○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li> <li>2.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여가 지원서비스와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를 혼용해서 선택 (주2회, 회당 60분)</li> </ul> </li> <li>3.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 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li> </ul> </li> <li>4. 4단계 : 서비스 이용자 생활만족도 검사 및 사후관리</li> </ul> </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상시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1:1~1:20)</li> <li>○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li> <li>※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실버맞춤문화활동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ul> </li> </ul> </li> </ul> <p>※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p>

## 6 [190208] 실버 생활건강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노년의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해소와 정서안정 지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회성 강화로 노후의 생활건강을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li> <li>○ 연 령 : 만65세 이상</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이 있는 경우(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제출)</li> <li>2.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 Beck우울증검사, 정신신경증상척도), 스트레스자가척도, 자살생각자가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신청시 검사결과지 제출)</li> <li>3. 노인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고립 등에 따른 긴급심리지원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li> </ol> </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폭행 및 학대, 사회적고립방치 등으로 인해 긴급심리치유활동을 요하는 자</li> <li>2.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li> <li>3. 치매, 우울증 등 자가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li> <li>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li> </ol> </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li>②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행동치료학 등 인간발달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li>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노인 심리지원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ol> </li> <li>2.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복지사,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li> <li>②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③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ol> </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지원내용</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td> <td>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A)</td> <td>144천원</td> <td>136천원</td> <td>12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B)</td> <td>16천원</td> <td>24천원</td> <td>32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 (만65세 이상 위험군)</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A)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B)	16천원	24천원	3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A)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B)	16천원	24천원	32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9 331 1460 1155"> <thead> <tr> <th data-bbox="359 331 1241 394">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331 1460 394">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9 394 1241 546">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원칙)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이내)         </td> <td data-bbox="1241 394 1460 546">           월1회 (회당 60분)         </td> </tr> <tr> <td data-bbox="359 546 1241 1155">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td> <td data-bbox="1241 546 1460 1155">           월3회 (회당 60분)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li> <li>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초기 상태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 진단·분석</li> <li>▶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심리치유, 정서안정, 인지향상) 서비스 제공</li> <li>▶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회참여서비스 실시</li> </ul>           ※ 심리상담·치유, 인지향상, 사회참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가능(회당 60분)         </li> <li>3.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li> </ol>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스트레스·자살사고 자가척도, 노인생활만족도) 의무 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원칙)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이내)	월1회 (회당 60분)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원칙)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이내)	월1회 (회당 60분)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p>⑥ 집단규모</p>	<p>○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치유서비스, 인지향상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집단상담 1:3)</p> <p>○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실버생활건강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 7 [060101]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에 의한 활동 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li> <li>○ 연 령 : 만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무관)</li> <li>○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li> <li>※ MHS산촌체험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 1. 장애1~2등급, 장기요양 1~3등급, 2. 장애3등급이하, 장기요양 4~6등급</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li> <li>2. 여행사 또는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li> <li>3. 전문학사 이상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리에이션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로 전문돌봄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특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등급 180천원/회, 2등급 170천원/회, 3등급 150천원/회, 4등급 74천원/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연1회)</th> <th colspan="3">1박 2일 프로그램</th> <th>당일프로그램</th> </tr> <tr>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장애등급 1~2급,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보험 1~3등급자</td> <td>장애 3급 이하, 상이등급 4~5등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td> <td>만65세 이상 노인,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td> <td>1, 2, 3등급에 상응하는 대상자</td> </tr> <tr> <td>서비스가격(A+B)</td> <td>180천원</td> <td>170천원</td> <td>150천원</td> <td>74천원</td> </tr> <tr> <td>정부지원금(A)</td> <td>155천원</td> <td>145천원</td> <td>125천원</td> <td>62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B)</td> <td>25천원</td> <td>25천원</td> <td>25천원</td> <td>12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연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보험 1~3등급자	장애 3급 이하, 상이등급 4~5등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1, 2, 3등급에 상응하는 대상자	서비스가격(A+B)	180천원	170천원	150천원	74천원	정부지원금(A)	155천원	145천원	125천원	62천원	본인부담금(B)	25천원	25천원	25천원	12천원
	구분 (연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보험 1~3등급자	장애 3급 이하, 상이등급 4~5등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1, 2, 3등급에 상응하는 대상자																									
	서비스가격(A+B)	180천원	170천원	150천원	74천원																									
정부지원금(A)	155천원	145천원	125천원	62천원																										
본인부담금(B)	25천원	25천원	25천원	12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평생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 서비스 제공</li> <li>▶ 연1회, 1~3등급은 1박2일, 4등급은 당일여행 서비스 지원(서비스 신청 후 6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li> <li>▶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1실 기준(5인 이하, 전원지역은 펜션 허용)</li> </ul>																													
⑥ 집단규모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사전 욕구조사 및 여행서비스 구성(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서비스)</li> <li>2.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실시</li> <li>3. 3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li> </ol>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li> <li>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li> <li>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li> <li>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li> <li>⑤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li> <li>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li> </ol> </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ul>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li> </ul> </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ol> </li> <li>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ol> </li> </o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ol> </li> </ul>

## 9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제한없음</li> <li>○ 연 령 : 만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li> <li>○ 선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신청시 장애인등록증 제출)</li> <li>2. 척수장애 및 근이양증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가능 장애아동(신청시 의사소견서,진단서제출)</li> <li>3. 중복장애자 경우 부장애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판정을 수반하는 사람(신청시 장애인등록증제출)</li> </ol> </li> <li>○ 우선순위 : 1. 지체1·2급 및 뇌병변 1, 2, 3급 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사소견서)</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li> <li>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한 의자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영양보호사</li> <li>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 (12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1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2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td> <td>중위소득 140% 초과</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정부지원금</td> <td>648천원</td> <td>576천원</td> <td>504천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본인부담금</td> <td>72천원</td> <td>144천원</td> <td>216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만19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식이 속하는 달까지), 재판정 4회(단, 대기자 수 및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구·군이 자율 결정)</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li> </ol> </li> <li>2. 점검 및 유지보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li> <li>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li> </ol> </li> <li>3. 상담 및 정보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li> <li>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li> </ol> </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li> <li>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li> <li>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li> </ol> </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li> </ol> </li> <li>2. 점검 및 유지보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li> <li>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li> </ol> </li> <li>3. 상담 및 정보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li> <li>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li> </ol> </li> </ol>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li> </ol> </li> <li>2. 점검 및 유지보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li> <li>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li> </ol> </li> <li>3. 상담 및 정보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li> <li>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li> </ol> </li> </ol>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ol> </li> </ol> </li> </ul>																

## 10 [280108]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li> <li>○ 연 령 : 만20세 이상</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3개월 이상 임신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li> <li>2.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 또는 고 위험군에 속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제출)</li> <li>3. 만65세 이상 노인</li> <li>4. 만20세~64세 이하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제출)</li> </ol> </li> <li>※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신부(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li> <li>2. 장애인 (장애등급 순)</li> <li>3. 만성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li> <li>4.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li> </ol> </li> <li>※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 준</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li> <li>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li> <li>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④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ol> </li> <li>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임신부(임신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0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r> </tbody> </table> </li> <li>2.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 14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분</th> <th>4등급</th> <th>5등급</th> <th>6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20천원</td> <td>112천원</td> <td>9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28천원</td> <td>42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0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28천원	4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0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28천원	42천원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형 지도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3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td> <td>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70%;">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td> <td style="width: 30%;">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70%;">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td> <td style="width: 30%;">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70%;">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 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 제공 3)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td> <td style="width: 30%;">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건강관리프로그램 : 월1회, 회당 60분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 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 제공 3)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건강관리프로그램 : 월1회, 회당 60분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 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 제공 3)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건강관리프로그램 : 월1회, 회당 60분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70%;">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td> <td style="width: 30%;">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p>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서비스 등록, 상담, 욕구 판정</li> <li>2.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사전검사 실시) ※ 혈액검사 필수사항 :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빈혈검사 ※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li> <li>3.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li> <li>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li> <li>5. 5단계 : 기초체력 검사 및 사후관리 (사후검사 실시)</li> </ol>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li> <li>○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li> <li>※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1:1~1:8)</li> <li>※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ul> </li> </ul> </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li> <li>○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직업능력개발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 12 [170108] 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li> <li>○ 연 령 : 부모, 예비부모, 조부모, 부부,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적령기 성인</li> <li>※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d style="width: 50%;">2.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r> <tr> <td>3.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td> <td>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r> </table> </li> <li>※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신청자의 연령(적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2.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3.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	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2.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3.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	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의 전임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의 상담 또는 교육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2. 사회복지 및 가정학, 심리, 상담학 학사학위 이상자로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li> <li>3. 사회복지, 가정학, 심리학 또는 상담학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7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3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li> <li>○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li> </ul> </li> <li>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li>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li> </ul> </li> <li>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li> </ul> </li> <li>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li> </ul> </li> </u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0이상 : 120분)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초기 상담 (서비스육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육구 조사,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 유형검사</li> <li>3. 3단계 : 전문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필수 서비스 : 월3회, 선택 서비스 월1회)</li> <li>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li> <li>5.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양육스트레스척도, 가족불화완화사례조사) 의무실시         </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li> </ul> </li> <li>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li>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li> </ul> </li> <li>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li> </ul> </li> <li>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li> </ul> </li> </ul> </li> </ol>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0이상 : 12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li> </ul> </li> <li>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li>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li> </ul> </li> <li>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li> </ul> </li> <li>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li> </ul> </li> </ul> </li> </ol>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0이상 : 120분)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li> <li>○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8인 이내 (1:1~1:8)</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배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부모학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 13 [230108] 다문화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항목	내용																
① 목적	결혼이민자, 귀화자 가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융합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li> <li>○ 연 령 : 제한없음</li> <li>○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귀화자</li> <li>○ 우선순위 : 1. 결혼이민자로서 임신부, 첫아이가구, 다자녀가구 순 2. 귀화자로서 임신부, 첫아이가구, 다자녀가구 순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신청자의 연령(적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li> <li>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증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3. 가정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가족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언어 교육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li> <li>② 다문화 체험 :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li> <li>③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교육 : 자녀 출산 및 양육교육, 부부관계 개선교육 등</li> </ul> </li> <li>2. 사회통합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 : 양육도우미, 출산지원 등</li> <li>② 결혼이민자 생활지원 : 외출지원, 통역 등</li> <li>③ 결혼이민자 가족문제 상담 : 가정 내 다양한 문제 상담 등</li> </u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2회 회당 60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li> <li>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생활만족도) 의무실시                 </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언어 교육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li> <li>② 다문화 체험 :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li> <li>③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교육 : 자녀 출산 및 양육교육, 부부관계 개선교육 등</li> </ul> </li> <li>2. 사회통합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 : 양육도우미, 출산지원 등</li> <li>② 결혼이민자 생활지원 : 외출지원, 통역 등</li> <li>③ 결혼이민자 가족문제 상담 : 가정 내 다양한 문제 상담 등</li> </ul> </li> </ol>	주2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언어 교육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li> <li>② 다문화 체험 :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li> <li>③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교육 : 자녀 출산 및 양육교육, 부부관계 개선교육 등</li> </ul> </li> <li>2. 사회통합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 : 양육도우미, 출산지원 등</li> <li>② 결혼이민자 생활지원 : 외출지원, 통역 등</li> <li>③ 결혼이민자 가족문제 상담 : 가정 내 다양한 문제 상담 등</li> </ul> </li> </ol>	주2회 회당 60분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li>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다문화가정행복바우처지원사업(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 14 [170208]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영유아누리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양육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가구 부모와 자녀의 상호교감 강화 및 가족불화 예방, 부모자녀 통합놀이를 통한 올바른 육아 경험 강화 및 자신감 고취 등 가족 정서안정 지원으로 출산장려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20% 이하</li> <li>○ 연 령 : 만3세 이하 영유아 양육 부모</li> <li>○ 선정기준 :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 위험군에 속하는 부모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시 검사결과 지 제출)</li> <li>※ 양육스트레스검사는 제공기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검사 가능</li> <li>※ 쌍둥이일 경우, 부모가 모두 신청가능</li> <li>※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 1. 첫째아가구 , 2. 한부모, 조손가구 3. 장애 부모, 4. 다자녀 가구 5. 다문화가정,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영유아 관련 실무경력 6개월이상인 사람</li> <li>2.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li> <li>3. “자격기본법”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대상자</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0%;">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80천원</td> <td>7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3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li> </ul>	대상자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정부지원금	80천원	7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0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정부지원금	80천원	7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아학교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육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li> <li>- 영유아 안전사고(음식, 생활안전) 예방 및 대처</li> <li>- 영유아 생활위생교육</li> </ul> </li> <li>② 마사지 교실: 영아 통 경감 마사지, 영유아 신체발달 촉진 마사지</li> <li>③ 요리교실: 영유아와 함께하는 시기별 이유식·간식 제조 실습</li> </o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1회 (50분 이상)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육아역량 강화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 집단상담 (5인 이내 집단형성 및 의견교환)</li> <li>②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교육</li> </o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1회 (10분 이상)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영유아오감만족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함양: 동요놀이, 인형놀이 등</li> <li>② 감성증진: 그림놀이, 종이접기, 반죽놀이(점토, 음식) 등</li> <li>③ 인지발달: 동화읽기, 숫자놀이 등</li> <li>④ 근육발달: 운동놀이, 영유아 체조 등</li> </o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3회 (회당 60분)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관은 연령별 그룹(영아반, 유아반)을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실시</li> </ul> </li> <li>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와 부모 중 1인이 함께 서비스 참여</li> </ul> </li> <li>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부모: 양육스트레스, 자녀: 정서지능검사) 의무 실시</li> </ul> </li> </ol> </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아학교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육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li> <li>- 영유아 안전사고(음식, 생활안전) 예방 및 대처</li> <li>- 영유아 생활위생교육</li> </ul> </li> <li>② 마사지 교실: 영아 통 경감 마사지, 영유아 신체발달 촉진 마사지</li> <li>③ 요리교실: 영유아와 함께하는 시기별 이유식·간식 제조 실습</li> </ol> </li> </ol>	월1회 (50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육아역량 강화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 집단상담 (5인 이내 집단형성 및 의견교환)</li> <li>②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교육</li> </ol> </li> </ol>	월1회 (10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영유아오감만족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함양: 동요놀이, 인형놀이 등</li> <li>② 감성증진: 그림놀이, 종이접기, 반죽놀이(점토, 음식) 등</li> <li>③ 인지발달: 동화읽기, 숫자놀이 등</li> <li>④ 근육발달: 운동놀이, 영유아 체조 등</li> </ol> </li> </ol>	월3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아학교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육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li> <li>- 영유아 안전사고(음식, 생활안전) 예방 및 대처</li> <li>- 영유아 생활위생교육</li> </ul> </li> <li>② 마사지 교실: 영아 통 경감 마사지, 영유아 신체발달 촉진 마사지</li> <li>③ 요리교실: 영유아와 함께하는 시기별 이유식·간식 제조 실습</li> </ol> </li> </ol>	월1회 (50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육아역량 강화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 집단상담 (5인 이내 집단형성 및 의견교환)</li> <li>②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교육</li> </ol> </li> </ol>	월1회 (10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영유아오감만족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함양: 동요놀이, 인형놀이 등</li> <li>② 감성증진: 그림놀이, 종이접기, 반죽놀이(점토, 음식) 등</li> <li>③ 인지발달: 동화읽기, 숫자놀이 등</li> <li>④ 근육발달: 운동놀이, 영유아 체조 등</li> </ol> </li> </ol>	월3회 (회당 60분)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어린이집, 유치원 내 장소 활용불가)</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영유아누리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u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li> </ul> </li> </ul>

15 [170308]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li> <li>○ 연 령 : 제한없음</li> <li>○ 선정기준 : 임신 3개월 이상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8개월 이하 산모 (신청시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li> <li>※ 부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영유아누리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상담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ul> </li> <li>②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li> <li>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임산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임산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ul> </li> <li>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산부 대상 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산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li> <li>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 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 체형교정 및 관리관련 종목)자격기본법에 의한 체형교정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ul> </li> </u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자</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7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3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li> </ul>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심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li> <li>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2회 (회당 50분)                         </td> </tr> <tr> <td>                             2. 산모학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li> <li>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li> <li>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3회 (회당 50분)                         </td> </tr> <tr> <td>                             3. 건강증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향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li> <li>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li> <li>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li> </ul> </td> <td></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li> <li>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li> </ul>	월2회 (회당 50분)	2. 산모학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li> <li>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li> <li>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li> </ul>	월3회 (회당 50분)	3. 건강증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향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li> <li>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li> <li>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li> </ul>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li> <li>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li> </ul>	월2회 (회당 50분)																
2. 산모학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li> <li>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li> <li>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li> </ul>	월3회 (회당 50분)																
3. 건강증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향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li> <li>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li> <li>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li> </ul>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li> <li>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리지원서비스 월2회 이상 필수</li> <li>② 산모학교서비스 및 건강증진 서비스 월3회</li> <li>③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관련 단체 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문단체·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li> </ul> </li> </ol> </li> <li>3.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 실시</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li> <li>○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ol> </li> <li>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li> </ol> </li> </ol> </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ol> </li> <li>○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산정기준 :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li> <li>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li> <li>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li> <li>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li> </ol> </li> <li>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li> </ol> </li> </ol> </li> <li>※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li> </ul>

## 16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li> <li>○ 연 령 : 만40세~만65세</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가 및 정서안정을 위한 설계하고 있는 가구</li> <li>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li> </ol> </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50세 이상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li> </ol> </li> <li>2. 만50세 미만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li> </ol> </li> </ol> </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li> <li>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li> <li>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자</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li> <li>※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li> </ul>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5%;">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15%;">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ol> </li> <li>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ol> </li> <li>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ol> </li> <li>4. 생활영농 심화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ol> </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월3회 (회당 60분)         </td> </tr> <tr> <td>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120~160천원, 본인부담금은 기준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차액)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월1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ol> </li> <li>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ol> </li> <li>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ol> </li> <li>4. 생활영농 심화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ol> </li> </ol>	월3회 (회당 60분)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120~160천원, 본인부담금은 기준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차액)	월1회 (회당 9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ol> </li> <li>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ol> </li> <li>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ol> </li> <li>4. 생활영농 심화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ol> </li> </ol>	월3회 (회당 60분)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120~160천원, 본인부담금은 기준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차액)	월1회 (회당 90분)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li> <li>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영농기술인지도, 생활만족도</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li> <li>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li> <li>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li> <li>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li> </ol> </li> <li>3. 집단활동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li> <li>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li> <li>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li> <li>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li> <li>⑤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li> <li>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li> </ol> </li> </ol> </li> <li>※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 1명 이상 의무동반 (미동반시 기준정보 및 집단규모 미준수 사례로 행정조치)</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li>○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 시설 기준(33㎡)를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li> <li>2.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li> </ol> </li> <li>※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li> <li>※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 17 [990208] MH (Mental Health) 산촌체험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우울증 등 스트레스 척도 고위험군, 자살위험군, 정신과 치료 필요 판정자 대상 심신안정 및 자존감 향상 등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실현 지원을 통한 행복한 삶의 영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40% 이하</li> <li>○ 연령 : 만40세~만60세</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필요 판정자(신청시 의사소견서, 진단서 제출)</li> <li>2.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척도 검사결과 고위험군(신청시 검사결과지 제출)</li> </ol> </li> <li>*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자는 제외</li> <li>* 우울증 및 스트레스검사는 제공기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주민센터 신청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li> <li>*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필요 판정자</li> <li>2. 우울증 등 스트레스 고위험군(최근 2년 이내 부모학교서비스,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이용자 우선)</li> <li>3. 독거세대, 한부모</li> </ol> </li> </ul>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li> <li>2. 여행사 또는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li> <li>3. 전문학사 이상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리에이션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로 전문돌봄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 특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li> </ol> <p>* 제공인력은 반드시 “1”의 조건(사회복지사 등)에 부합하는 인력 1명 이상 의무 채용</p>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15%;">대상자</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36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4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평생 2회</li> <li>*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li> <li>*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li> </ul>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36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24천원	32천원	48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36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24천원	32천원	48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85%;">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15%;">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신수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신수련 : 체조·무예·예배 등</li> <li>② 예절교육 : 예절교육, 다도 등</li> <li>③ 산촌정비 : 환경정비 등</li> </ol> </li> <li>2. 자아 발견 및 존중감 향상을 위한 명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명상방법 교육</li> <li>② 자성의 시간과 정서안정을 위한 명상</li> <li>③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참선 등 심화과정</li> </ol> </li> <li>3. 자아 성찰 및 실현을 위한 심리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스트레스 및 고민 해소를 위한 좌담</li> <li>② 삶의 가치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각성의 시간</li> <li>③ 자존감 회복과 행복한 자아 발견을 위한 대화의 장</li> </ol> </li> <li>4. 정서안정 및 감성향상 체험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산촌 체험</li> <li>②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증진하는 향토음식 만들기</li> <li>③ 마음의 수련과 오감안정을 위한 천연염색, 한지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li> </o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박2일</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신수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신수련 : 체조·무예·예배 등</li> <li>② 예절교육 : 예절교육, 다도 등</li> <li>③ 산촌정비 : 환경정비 등</li> </ol> </li> <li>2. 자아 발견 및 존중감 향상을 위한 명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명상방법 교육</li> <li>② 자성의 시간과 정서안정을 위한 명상</li> <li>③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참선 등 심화과정</li> </ol> </li> <li>3. 자아 성찰 및 실현을 위한 심리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스트레스 및 고민 해소를 위한 좌담</li> <li>② 삶의 가치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각성의 시간</li> <li>③ 자존감 회복과 행복한 자아 발견을 위한 대화의 장</li> </ol> </li> <li>4. 정서안정 및 감성향상 체험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산촌 체험</li> <li>②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증진하는 향토음식 만들기</li> <li>③ 마음의 수련과 오감안정을 위한 천연염색, 한지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li> </ol> </li> </ol>	1박2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신수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신수련 : 체조·무예·예배 등</li> <li>② 예절교육 : 예절교육, 다도 등</li> <li>③ 산촌정비 : 환경정비 등</li> </ol> </li> <li>2. 자아 발견 및 존중감 향상을 위한 명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명상방법 교육</li> <li>② 자성의 시간과 정서안정을 위한 명상</li> <li>③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참선 등 심화과정</li> </ol> </li> <li>3. 자아 성찰 및 실현을 위한 심리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스트레스 및 고민 해소를 위한 좌담</li> <li>② 삶의 가치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각성의 시간</li> <li>③ 자존감 회복과 행복한 자아 발견을 위한 대화의 장</li> </ol> </li> <li>4. 정서안정 및 감성향상 체험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 함께하는 산촌 체험</li> <li>②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증진하는 향토음식 만들기</li> <li>③ 마음의 수련과 오감안정을 위한 천연염색, 한지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li> </ol> </li> </ol>	1박2일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중복 서비스 불가</li> </ul> </li> <li>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이용자 동의하에 자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1회, 1박2일 서비스 제공</li> <li>▶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1실 기준 (5인 이하, 전원지역은 펜션 또는 산사체험 숙박시설 허용)</li> <li>▶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 1명 이상 의무동반 (미동반시 기준정보 및 집단규모 미준수 사례로 행정조치)</li> </ul> </li> <li>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ul>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li> <li>○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li> <li>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li> <li>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li> <li>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li> <li>⑤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li> <li>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li> </ol> </li> <li>※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 1명 이상 의무동반 (미동반시 기준정보 및 집단규모 미준수 사례로 행정조치)</li> <li>※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ul>